

대전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나1032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나10329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12960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항소인 1. A

2. B

3.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도현택

변론 종결 2021. 6. 22.

판결 선고 2021. 7. 20.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129606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A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8.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고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137,477,71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37,477,7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A, B

제1심판결 중 피고 A,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C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17행부터 제7면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이 피고 C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 A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근저당권이 피고 C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담보 외에 향후 외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까지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G은 F으로부터 1억 5,000여만 원을 초과입금 받은 상태였으므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피고 B는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실제 G이 F에 대하여 102,249,644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세무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거래처원장(을 제6호증)을 작성하다 보니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1억 5,000여만 원을 초과입금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서 새로운 거래처원장(을 제8호증)과 각 거래명세표(을 제9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위 거래처원장과 각 거래명세표는 피고 B가 자신의 주장에 맞추어 새로이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B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피고 A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 F과 피고 C는 2019. 4. 30.경까지2) 1개월 남짓 물품거래를 하였을 뿐 그 이후 물품거래는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A은 F과 피고 C가 2019. 4. 30. 이후에도 2019. 6. 24.까지 총 27,977,300원 상당의 물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서 각 거래명세표(을 제11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위 각 거래명세표는 피고 A이 자신의 주장에 맞추어 새로이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A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 F과 G은 2019. 3. 29.경까지3) 10일 가량 물품거래를 하였을 뿐 그 이후 물품거래는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B는 F과 G이 2019. 3. 29. 이후에도 2019. 4. 9.과 2019. 4. 29. 물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등에 비추어 볼 때, D는 F으로 하여금 피고 C나 G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피고 A, B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실제 G이 F에 대하여 102,249,644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C와 G이 F과 2019. 6. 24.경까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나 피고 A,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여전히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이 F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민사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담보하는 수단이고, 법인의 책임재산과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책임재산은 원칙적으로 별개인 점,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채무자에게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을 대물변제 또는 담보조로 처분하게 될 경우 법인의 대표자 등의 일반 채권자들로서는 기존 공동담보의 가치에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D 본인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 A, B, C나 G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나 약정금채무 등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D 자신의 변제자력 회복과는 무관한 것으로 D의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A, B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9면 3행의 "있다" 다음에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전득자 포함)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20행의 "없다" 다음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나 G이 D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D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선의 항변

피고들은 F이 2019. 3. 8.경 N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고들을 포함한 거래처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업을 정상화하고 있어 F이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이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스스로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태영

판사김윤종

판사윤현정

별지

1) 피고들의 항소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회한다.

2) 을 제3호증의 2 참조

3) 을 제6호증 중 4면 참조

4) 을 제3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주장하는 2019. 4. 9.과 2019. 4. 29.의 물품거래는 G과 F 사이가 아닌 피고 C와 F 사이의 거래로 인정될 뿐이다.